

주주님께

제 15 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 23조에 의거 제 15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년 3월 22일(금) / 오전 9시 30분

2. 장 소 :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 (한신IT타워2차) 8층 <본사교육장>

3. 회의 목적 사항

가. 보고 사항 :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실태보고

나. 부의 사항

- 제 1호 의안 : 제15기(2018.1.1.~2018.12.31)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(안) 포함) 승인의 건

- 제 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 (*세부내용은 붙임 참조)

주식좌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정관 일부 변경

- 제 3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제 3-1호 의안 : 사외이사 이경환 (재선임)

성명	생년월일	주요경력	추천인	회사와의 거래내역	최대주주와의 관계
이경환	1971.02	- 경원산업 근무 - 現) 오키멧 대표이사 - 現)(주)엠씨넥스 사외이사	이사회	없음	없음

- 제 4호 의안 :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- 제 5호 의안 :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

4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 참석장,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주총 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신분증

5.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「상법」 제368조의 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가.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: 「<http://evote.ksd.or.kr>」

나. 전자투표 기간: 2019년 3월 12일 ~ 2019년 3월 21일

-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 (단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다.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인증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

-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: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·증권 범용 공인인증서

6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본사와 하나은행증권 대행부에 비치하였고,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7. 기타사항

- 제15기 예정배당은 1주당 현금 300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.
- 주주총회 기념품은 회사경비 절감을 위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주차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 년 3 월 7 일

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 47 (가산동 한신IT타워2차) 11층
(T.02-2025-3600)

주식회사 엠씨넥스
대표이사 민 동 욱 (직인생략)

※ 불임_신·구조문 대비표(정관 변경)

기 존	변 경	변 경 사 유
제8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 회사의 주권은 1주권, 5주권, 10주권, 50주권, 100주권, 500주권, 1,000주권 및 10,000주권의 8종류로 한다.	제8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 삭제	-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(전자증권법 §25 ①)
(신설)	제8조의2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거래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	-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
제15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①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.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 취급 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의결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.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	제15조 (명의개서대리인) ① (현행과같음) ② (현행과같음) ③ 당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, 주식의 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(현행과같음)	-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
제16조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	제16조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삭제	- 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
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회사는 매년 1월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	제17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(현행과같음)	

<p>② 회사는 매년 12월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.</p> <p>③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. 이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같음)</p> <p>③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,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조항 문구 명확화</p>
<p>제22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5조 (명의개서대리인), 제16조 (주주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	<p>제22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5조 (명의개서대리인)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	<p>- 제16조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</p>
<p>제23조(소집시기)</p> <p>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제23조(소집시기)</p> <p>① (현행과같음)</p> <p>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- 조항 문구 명확화</p>
<p>제57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(또는 감사위원회)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.</p>	<p>제57조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(또는 감사위원회)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,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- 법률 명칭변경에 따른 자구수정외</p>
<p>부 칙 <신설></p>	<p>부 칙 (시행일자) 이 정관은 2019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, 제8조의2, 제15조, 제16조 및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「주식채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시행일자 부칙 추가</p>